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*****
- 2. 취소 사유 : 국세경정(당기비용 손금으로 인정)
- 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	88,255,300	88,255,30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국세청통보내역 등 1부.
 4. 감액증빙서류 1부. 끝.

주무관 윤지수 지방소득세1팀 이덕배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전결 11/10 김용운

협조자